

문서번호	가정복지과-20580
결재일자	2016.4.2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아동청소년복지팀장	가정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
박두리	서명선	신용하	04/20 오정식
협 조			

2016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계획



복 지 환 경 국
(가 정 복 지 과)

2016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계획

사회·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 근거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(위기청소년 특별지원), 제15조(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- 2016년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II 사업 개요

- 기 간: 2016. 4월 ~ 12월
- 지원대상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)
 - ① 나이 기준: 만 9세 이상 ~ 만 18세 이하 청소년
 - ②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 - 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초·중·고등학교, 공민학교, 기술학교, 특수학교 등)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
 - ④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 - ※ 이 경우에만 생활, 건강지원 가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근거)
 - ⑤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 미만
 - ※ 단, 생활, 건강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(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)
- 지원종류
 - 생활, 건강, 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
 - ※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은 붙임문서 참조(붙임 1)
- 예 산: 14,000천원(국비 7,000천원, 시비 7,000천원)

<p>기획·홍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 수립 ■ 동별 사업내용 홍보 및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 	<p>4월</p>
<p>↓</p>		
<p>신청·접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구청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■ 정기 접수(2회): 4, 8월 ■ 수시 접수: 연중 	<p>4, 8월</p>
<p>↓</p>		
<p>조사·선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득·재산 및 생활실태조사 ■ 위기상황 확인(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) ■ 심의 및 최종 선정(CYS-Net 운영위원회) ※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가능(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) 	<p>5, 9월</p>
<p>↓</p>		
<p>통보·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청소년,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명단 통보 ■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	<p>4~12월</p>
<p>↓</p>		
<p>사후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 자격 등 변동사항 확인 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속적 사례관리 실시 ■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만족도 조사·분석 	<p>5~12월</p>

1. 특별지원 신청

□ 신청인

-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교육 공무원, 사회복지사, 청소년상담사·지도사
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

□ 신청 장소 및 기간: 구청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

□ 신청서 및 구비서류

○ 신청서

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(붙임 2)
※ 신청인(발급자)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(붙임 7)
- 소득·재산 신고서(붙임 8)

○ 구비서류(해당자에 한함)

- 청소년이 속한 가구(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)의 소득·재산 확인 서류
※ 월급명세서, 전·월세 계약서(정기 수입자나 전·월세 거주자 필수)

2. 대상자 조사

□ 소득·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

○ 조사범위: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

- 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

○ 조사내용

- 보호자의 유무, 보호 정도 등 **보호자**에 관한 사항
- 청소년의 생계, 학업, 건강상태 등 **생활실태**에 관한 사항
-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**소득 및 재산**에 관한 사항
- **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**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○ 방 법

- 시군구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**전산조회**
-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,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은 **실태 조사**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 첨부
※ 부정기적인 사업·자영업 사업자, 근로능력, 생활실태, 부양의부자의 부양 여부 등
- **조사 자료의 제출요구**
※ 월급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임대차계약서 사본, 무료임대확인서 등 전산망에 의해 확보할 수 없는 서류 요구

□ 위기상황 확인
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연계기관 담당자 등 발굴 단계의 신청인에게 초기상담 의뢰,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제출받아 확인
- 가출, 범죄, 비행, 학업중단 등 해당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 확인 및 특별 지원의 종류, 지원의 긴급정도 등 판단

3.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

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2013년부터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폐지 →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(CYS-Net)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(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)
- 역할
 -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 - 지원내용 변경, 기간 연장, 중지 등 결정
 -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
- 심의 예외사항
 -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‘운영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(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)
 ※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첨부(붙임 3)

□ 광진구 운영위원회 현황

- 심의위원: 총 11명(위원장: 복지환경국장)
- 명 단

연번	현 직	성 명	비 고	연번	현 직	성 명	비 고
1	광진구 복지환경국장	오정식	위원장	7	자양고등학교장	이영식	위원
2	광진구 가정복지과장	신용하	간사	8	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장	양영희	위원
3	성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	김종희	위원	9	번호사	정성주	위원
4	1388청소년지원단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	박도희	위원 (겸임)	10	녹색어머니연합회	이명숙	위원
5	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	김정훈	위원	11	광진구 보건 의료과장	임옥용	위원
6	동부고용지원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장	김효규	위원	12	이하빈칸		

4. 선정 통보 및 지원

□ 특별지원 결정 통보 및 사례관리 계약서 작성

- 특별지원 결정내용을 청소년 본인,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**서면으로 통보**
 - 통보내용: 지원 내용·금액 및 기간, 개시시기 등 결정 요지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명단 송부, **사례관리계약서(붙임 4) 작성 및 사례관리 대장 관리** 의뢰

□ 지원금 지급

- 대상자별 사례관리계약서 확인 후 예산 지원
- 지원금은 특별지원 대상 **청소년 계좌에 직접 입금**하며 운영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

지 원 원 칩

- **지원**은 1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
 - ※ 다만, 학업,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(총 지원기간이 3년까지 가능)
- **중복지원 금지 및 긴급지원 원칙**
 -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
 - 긴급 위기사례의 경우 운영위원회 미개최, 서면 개최 등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

5. 사후 관리

□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관리

- 부모,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점검(월 1회)
-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·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 상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

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**사례관리 및 정기상담**(월 1~2회)

- 개입 과정을 통한 성장·자립 의지 확인 및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

□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**만족도 조사·분석**,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**지속적인 상담서비스** 제공

IV

향 후 계 획

- 각 동 및 관내 학교 등에 사업내용 홍보, 대상자 발굴 협조 요청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진행비 지급
 - 사례관리 특성상 소요되는 출장비, 교통비, 휴대폰 보조금 등의 경비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및 상담 현황 지도감독 실시
 - 대상자 선정 직후 사례관리계약서 작성 및 대장 관리
 - 월 1~2회 상담·사례관리 의무화 고지 및 시행
 - 상담·사례관리 참여도 평가 및 지원 종결 시점에 설문조사 실시
- 여성가족부(서울특별시)에 특별지원 사업 결과 제출 및 정산보고(내년 1월)

- 붙임 1.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 1부.
2.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1부.
3.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1부.
4. 특별지원 사례관리계약서 1부.
5. 특별지원 사례관리 1부.
6. 특별지원 설문지 1부.
7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
8. 소득·재산신고서 1부.
9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.